

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공원녹지과

제정 2000· 1· 13 조례 제 320호
전부개정 2010· 3· 23 조례 제 833호
일부개정 2018· 5· 18 조례 제1400호
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24· 9· 30 조례 제2146호
일부개정 2025· 8· 8 조례 제225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8· 5· 18]

제2조 삭제 <2018· 5· 18>

제2조의2(공원시설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,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.

②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시설의 점유·운영부서가 재산관리 주체가 된다.

1. 「이천시 반도체 융·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
2. 문화공원에 설치하는 동물놀이터

[본조신설 2025· 8· 8]

제3조(점용허가의 신청)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의 점용허가신청서를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· 9· 30>

제4조(점용료의 징수 등)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· 징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· 9· 30>

제5조(점용료의 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·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2.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

제6조(점용료의 반환)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
2. 점용자가 점용허가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,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한다.

제7조(전매 등의 제한)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 등은 전매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. <개정 2024·9·30>

제8조 삭제 <2018·5·18>

제9조(이천시 도시공원위원회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도시공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4·9·30>

1.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
2.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자문·심의
3.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자문·심의
4. 도시녹화계획의 심의
5.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8·5·18]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2024·9·30>

1. 당연직 위원: 공원녹지업무 관련 국장
2. 위촉직 위원: 도시공원·녹지·도시계획·경관·조경·산림·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8·5·18]

제11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
2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[본조신설 2018·5·18]

제1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·5·18]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

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본조신설 2018·5·18]

제14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본조신설 2018·5·18]

제15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담당팀장이 되며, 서기는 공원녹지업무담당이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,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.

[본조신설 2018·5·18]

제16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4·9·30>

[본조신설 2018·5·18]

제1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·5·18]

제18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공원 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운동시설·편익시설 및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이천시시설관리공단(이하 “시설관리공단”이라 한다)에 위탁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이천시

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및 「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24·9·30]

제19조(위탁관리 기간)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4·9·30]

제20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.

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수탁자는 재난 및 풍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해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·양여·교환 또는 관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,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·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.

⑤ 수탁자가 고의, 과실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,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4·9·30]

제21조(위탁관리·운영의 취소)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2.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
3. 수탁자가 관리·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4.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[본조신설 2024·9·30]

제22조(지도감독)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·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,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4·9·30]

제23조(공원시설의 사용료) ① 공원 및 공원시설 중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.

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아니한다.

1.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시장이 사용을 중지하였을 경우: 전액환불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상황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: 전액환불
3. 공원관리자의 귀책사유로 공원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: 전액환불
4.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: 전액환불
5. 사용자가 시설 이용예약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: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하여 환불

③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이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·수탁계약 시에 사용료의 징수 및 수납 방법에 대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4·9·30]

제24조(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신청)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예약자”라 한다)는 온라인으로 사전예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전예약 신청자는 예약 시 시설사용료를 즉시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사전예약 시 시설중 2분의 1 범위에서 이천시민우선예약제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4·9·30]

제25조(사용료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.

1. 전액 감면

- 가.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
- 나. 이천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
- 다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100분의 50 감면

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- 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마. 사용일 현재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이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
- 바. 이천시 주둔 군부대 소속으로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에 따른 군인

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,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1개 시설에 한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·9·30]

제26조(시설사용료의 게시)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가 요금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4·9·30]

제27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

③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.

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,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.

[본조신설 2024·9·30]

제28조(시설의 사용제한 등)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홍보 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
2.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
3.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
[본조신설 2024·9·30]

제29조(책임 및 보상)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·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4·9·30]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예) 제9조 점용료율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0·3·23 조례 제83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·5·18 조례 제140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·9·30 조례 제214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5·8·8 조례 제2259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〈중전 별표에서 이동 2024. 9. 30〉

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산정기준(제4조 관련)

점 용 대 상	기 준 단 위		점용료 요율
	점 용	기 간	
1. 전주, 전선, 변전소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	m ²	1년	재산가액 100분의 10 다만,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는 500원, H형주인 때에는 800원, 철탑인 때에는 1,000원 지하인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5
2. 수도관, 하수관, 가스관, 공동구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	m ²	1년	재산가액의 100분의 5
3. 철도, 궤도, 노외주차장, 선착장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	m ²	1년	재산가액의 100분의 8
4. 경기, 집회, 전시회,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	m ²	1년	재산가액의 100분의 20
5. 영 제22조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	m ²	1년	재산가액의 100분의 20
6. 그 밖에 공원조성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및 가설 건축물	m ²	1년	재산가액의 100분의 8 다만, 지하매설물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5

※ 비 고

1. 재산가액은 해당 토지의 「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.
2.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의 12분의1년으로 한다.

[별표 2] 〈신설 2024·9·30〉

사용료 납부대상 공원·공원시설물의 사용료
(제23조 관련)

1.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

가. 사용료

(단위 : 원)

공원명 (시설명)	시설별	사용기준	성수기 (7~8월)	비수기		비 고
				금~일요일 공휴일 전일	평일 (월~목)	
복하천 제3수변공원 (캠핑장)	캠핑장	카라반 존	45,000	45,000	35,000	1박 기준
		데크형	90,000	90,000	70,000	
		파쇄석형	80,000	80,000	60,000	
	전 기 사용료	1개소	1박 기준 600w이내 무료 (초과 사용 시 4,000원 요금부과)			최대사용 3kw

- 1)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.
- 2)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
 - 가)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:00부터 다음 날 11:00까지로 한다.
 - 나) 1개소의 캠핑장에 4명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명당 3,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.
 - 다)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.
 - (1).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: 5,000원
 - (2). 2시간 초과 3시간까지 : 10,000원
- 3) 주차는 캠핑데크 1개소 당 1대만 허용